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2005. 3. 1 제정
 2006. 3. 1 일부개정
 2007. 9. 1 일부개정
 2009. 3. 1 일부개정
 2012. 5.14 일부개정
 2014. 3. 1 전면개정
 2014. 6.11 일부개정
 <교무팀>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자격은 정교수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처장으로 한다.
- 제4조 (위원회의 지위)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
-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교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의 윤리 일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1. 「교원윤리강령」 및 「교원윤리규정」의 제정·개정 및 해석
 2. 이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발의
 3. 「교원윤리강령」 및 「교원윤리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4.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
 5. 그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 ②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한다.
1. 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센터
 2.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3. 생명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의 소집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 (심의요청) ① 교원, 직원, 학생 등 개인 또는 본교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교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교원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원, 대학부서 또는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특정교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교원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요청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다.
- ④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8조 (조사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된 교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및 관계인(신청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 또는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료제출과 출석 등을 요구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교내외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 ⑥ 총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다만,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심의가 종결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로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사건의 회부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가 피신청인 소속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대학(원)장 또는 학부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대학(원)장 또는 학부장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대학(원)장·학부장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사건을 심의한다.
- 제10조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경고 또는 중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에 따라 사안이 극히 경미하고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1항의 조치 중 경고를 이미 2회 이상 받았거나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를 피신청인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의) ①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즉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제8조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11>

제12조 (피신청인의 보고의무 등) ① 제10조 제1항 본문의 조치 중 시정요구 또는 중재 등 (권고 및 경고는 제외)을 통지받은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1항의 이행결과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이 당해 심의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피신청인·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② 피신청인·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피신청인에 대한 심의·조사 및 조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② 제8조부터 제11조의 조사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등 제1항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신청사실이나 신청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조사기간 동안 특정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청인 등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밖에 학사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피신청인의 특정 직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허위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서면으로 권고,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원회가 이미 심의·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제출 없이 거듭 심의요청하는 행위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

② 위원회가 직접 서면으로 제1항의 조치를 발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제8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제6항 개정, 제13조 개정, 제11조 제3항 신설, 제12조 제3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3항, 제5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4호)